



구 분		
열람·서명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성명 정남철 (서명)
	건국대학교 교수	성명 이현수 (서명)
확 인 자	정보공개담당관	성명 김순희
작 성 자	정보공개담당관 행정7급	성명 이희준

## 2023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10.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

# 「 2023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9. 22.(금) 16:00 ~ 16:37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정남철, 이현수, 노승용, 김순희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팀장, (서기) 이희준 주무관
- ◆ 안 건 : 이의신청 2건
  - (2023-67) : 감사원 대상 행정소송한 내용
  - (2023-68) :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현장확인 계획 및 결과보고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3-67) : 기각 - 비공개
  - (2023-68) : 부분인용 - 부분공개

【 의안번호 2023-67 이의신청 】

안건명 : 감사원 대상 행정소송한 내용

<000 위원>

의안번호 제2023-67호 법률지원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팀장>

법률지원과 팀장 000입니다.

<000 위원>

먼저 이 안건은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감사원과 서울특별시장, 또 소속 공무원 간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1심부터 상고심 대법원 판결까지가 있고, 또 다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취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사실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이런 데 검색을 해 보니까 첫 번째 원고와 서울특별시, 물론 시장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로 이렇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청인께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관 중인 판결문 원본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000 팀장>

저희가 전화로 이게 사실은 법원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청인께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고, 함께 진행을 하다가 따로 추가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멈추시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셨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거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게 비공개 사유로 다른 법률은 조금 그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여기

지금 부서 의견을 새로 6호, 7호를 든 거는 이해가 됩니다.

우선 지금 그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은 법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익명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검토해서 판결문을 제공하지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 정보는 소정의 비용이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판결문 공개 신청을 하면 다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또 안내도 해 드렸는데 이걸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석연치 않고요.

혹시 첫 번째 판결문에 대법원 2014두5637 사건의 원고는 뭔가 각하 판결을 받은 이후에 어떤 별도의 징계절차가 서울시에서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 <000 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시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드린 원고 관련된 부분 말고 지금 그 부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를 해야 한다면 판결문 중에 어떤 부분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 <000 팀장>

저희가 판결문을 비공개로 하였던 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비공개 사유가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였고요. 사실은 아까 조금 논거가 빈약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정보공개법 4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아예 정보공개법 자체에 판결문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법률문서이고, 법률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사소송법 이게 행정소송 관련이고,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을 준용하고 있으니까 민사소송법상의 법원문서 열람이라든가 소송기록 열람과 증명서청구 이 절차가 다른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

에 이 법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목적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대해서는 소송기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판단이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거는 저희 공공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4조를 적용해서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은 거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9조의 비공개 사유인 징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9조 비공개 사유까지도 저희가 함께 비공개 이유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거 하나하나가 이게 사실은 공개 변론이 됐었는지 비공개 변론이 됐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갖고 있다고 해서 공개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서울시의 지금 보관문서는 맞지 않습니까?

<000 팀장>

보관문서는 맞는데 아예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관하고 있다 없다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000 위원>

혹시 원고가 이렇게 무슨 이해관계에 있는 거는 혹시 파악하셨는지요? 판결이나 원고 또는.

<000 팀장>

그런 거는 특별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시다.

<000 위원>

청구인께서 법원을 통해서 해당 판결문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것도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굳이 서울시를

상대로 이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오로지 비용 때문이신 건가요?

<000 팀장>

비용의 액수보다도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전자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복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000 위원>

법원에다가 판결문 공개를 신청을 하면 제 기억에 몇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납부하시는 게 절차적으로 어려워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000 팀장>

네. 전체적으로 카드 사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딱 멈춰서요.

<000 위원>

그런데 서울시한테 정보공개청구하면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000 위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고 서울시도 예를 들어서 실비 차원에서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면, 예컨대 개인정보 삭제라든가 기술적인 비용이 들면 여기에도 비용이 소요됐다는 점을 밝히고 청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팀장님은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결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판결문 다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왜 비공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제는 여기 보면 원고와 또 ■■■의 영업상 감사받은 사항이 나와서 비공개 대상을 판단해서 저희가 일일이 그걸 제외하고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안내를 해 드렸고 굳이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공개하면서 비공개, 공개, 부분공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여기서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히려 이것을 기각하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

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하는 데도 적지 않게 인력과 또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 때문에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판결문의 내용에 저희가 어느 부분이 공개돼야 되고 비공개돼야 될지를 이렇게 세심히 나누어서 다 쪼갠 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부분공개 결정하기에도 분명히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판결문 관련해서 신청인께서 소송 당사자였다든지 전혀 그런 이해관계를 밝히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뭔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는데... 이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판결문 공개할 때 1차적으로는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공개가 돼야 될지 결정을 지금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부분공개 결정하는 건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의견처럼 저도 기각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 <000 위원, 000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000 위원>

감사합니다. 기각 의견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저희 의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67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68 이의신청 】**

**안건명 :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현장확인 계획 및 결과보고**

<000 위원>

의안번호 제2023-68호 강남소방서 예방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전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팀장>

저는 강남소방서 예방과 팀장 000이라고 합니다.

<000 위원>

해당 빌딩의 소방안전 관련 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특별한 이유가 될 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담당자들께서 아시는지 여쭙습니다.

<000 팀장>

청구인은 소방시설관리사로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빌딩 별관과 관련을 해서 과거에 점검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허위점검으로 관리사와 관리업체가 다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는 건물 관계인이랑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 청구인께서 혹시 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무슨 임차인이신가, 그래서 소방안전이 자기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련성은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소방서에서는 청구인의 본래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셨잖아요. 공개 못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이의신청하시면서 다른 소방서들에서는 이런 자체 점검 조치명령, 현장확인 및 결과보고서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 공개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일선 소방관서들의 정보공개 관행이 그러신가요?

<000 팀장>

제가 타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렇게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 관계인도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이해 관계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지를 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건지를 물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을 했을 때 이 건물 관계인은 비공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개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공개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건물 관계인이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경우라서 저희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겁니다.

<000 위원>

이 빌딩이 그냥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인 거지요?

<000 팀장>

맞습니다. 법인 소유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개인 소유입니다.

<000 위원>

또 이의신청서 내용을 보니까 비공개 사유가 잘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 비공개 사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소명해 달라, 또는 결과보고서 실시일이 언제인지를 또 밝혀달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 실시한 그 날짜를 공개하는 것은 혹시 담당자들 보시기에 이 공개로 인해서 뭔가 불편해지고 이런 점이 있나요?

<000 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를 다 공개를 해달라고 해서 뭐 때문인지 그 취지를 몰라서 공개를 못 했다가 이번에 들어온 이의신청서를 보고 왜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REDACTED]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인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REDACTED]

[REDACTED]

그리고 그 외에도 출장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걸 다 공개를 해 줬고요. 혹시 출장이나 이런 데 [REDACTED] [REDACTED]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의신청 내역을 보니까 이때 나간 공무원이 [REDACTED] [REDACTED]. 그래서 그 공무원의 출장일시를 알아서 그다음에 다시 출장내역을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REDACTED] [REDACTED]라고 이의신청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000 위원>

그렇군요. 저도 실시일을 왜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혔는데 담당 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떤 의도로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건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그 심의대상 부분공개 정보로 보내주신 첫 번째 서류에 파일명이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대상 점검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해서 열어보니까 점검 확인서하고 괄호 안에 땡땡땡땡땡 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비공개하시겠다는 의도인 건가요?

<000 팀장>

저희가 관행적으로 빌딩 별관 그 부분을 땡땡땡땡땡 한 건데요. 이게 저희가 목록은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언제쯤 했더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목을 대부분 다 이렇게 비공개 불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대상명하고 소재지까지 비공개하는 거는 실익은 없지요?

<000 팀장>

대상명과 소재지는 저희가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000 위원>

반면에 000이라고 하는 이 성함은 이 빌딩 별관 소유자 성함이신가 보네요?

<000 팀장>

소방안전관리자 이름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관계자하고 전화번호는 비공개 의견 주셨고요. 그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확인일 이거 지금 비공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신 거지요?

<000 팀장>

현장확인일도 비공개를...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거는 뭐 공개를 하나 안 하나 큰 의미는 없어서요.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공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취지를 저희가 미리 이렇게 예단해서 이거를 현장확인일을 공개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이 어떤 업무를 집행한 그 날짜이다 보니까 공무원의 실명이랑 현장확인일은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저도 방금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확인일이나 확인자 소방위 000, 소방교 000 두 분 나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8일에 두 분이 현장확인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공개하는 게 원칙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지금 관계자의 성함과 전화번호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저도 합당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문서를 열어보면 파일제목이 조치명령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빌딩이라고 하는 개인 소유물의 어떤 하자 부분인데요. 이거는 공개 안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000 팀장>

이게 지금 빌딩 별관에 대한 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다시 바꾸면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관련해서 행정처분받은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과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내역들은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00 위원>

그러면 세 번째가 사진 PDF파일이던데요. 이것도 건물에 사적 소유물 안에 설치된 여러 시설들 사진이어서요. 이것도 전체 다 비공개 의견이신 거지요?

<000 팀장>

맞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결한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심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지금 관련된 정보 3개 중에 팀장님, 담당자분들께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은 다 비공개하고, 다만 첫 번째 점검확인서상에 대상명과 소재지, 현장확인일, 확인자성명 이렇게는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00 위원>

관계자와 전화번호도 다 공개하는 의견이신가요?

<000 위원>

그거는 비공개입니다. 성함하고 전화번호 이것은 비공개이고요. 나머지는 공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서는 비공개.

<000 위원>

첫 번째 문서의 관계자, 전화번호 빼고는 다 공개하고, 첨부된 1번, 2번은 다 비공개해서 부분공개 의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인용으로 의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000위원>

저도 주심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 문서의 두 가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주심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부분인용으로 하겠습니다.

<000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비공개 사유는 지금 여기 안건 올라온 것처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안건도 6호, 7호고 두 번째 안건도 동일합니다.

팀장님, 저희가 의결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자명과 전화번호 이 부분만 비공개하고, 그 문서의 나머지는 공개하는 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문서는 다 비공개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68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